

의안번호	2216425
의 퇴 인	박희승의원
회 답 일	2026.4.1.
추계번호	26C0557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3 (의료사고의 설명 등)	보건의료기관개설자,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”이라 한다)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(이하 “환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의료사고의 내용,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,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46조의3 (보험 등의 가입 의무)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(이하 “책임보험 등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-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 등 상품 설계, 손해평가, 보험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(제2항) -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4항)	재량규정
		다만, 필수의료행위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의3 (의료사고의 설명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6조의3 (보험 등의 가입 의무)	

2. 상세 사유

□ 의료사고의 설명 등(안 제5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현시점에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
□ 보험 등의 가입 의무(안 제46조의3)

-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업무의 위탁 및 국가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함
- 개정안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될 경우, 현재 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비와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
- 그러나, 현시점에는 신규 보험 가입 범위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원의 추가 운영비 및 국가의 지원금 증액분을 추계하기 어려움
 - － 보건복지부는 “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”(2026년 기준 82억 3,900만원)을 통해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산부인과·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필수의료 보험료를

지원하고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